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703850			
등록번호	110111-7038501			
상 호 출				
본 점 🕹				
,	2020.04.10 변경 2020.04.20 등기			
공고방법				
1주의 금액				
	<u>2019.06.10</u> 변경 2019.06.12 등기			
발행할 주~				
발행주식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 총수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보통주식 발행주식의		20,000 주 200,000 주	금 100,000,000 원	 2019.06.10 변경
보통주식		200,000 주	금 100,000,000 원	2019.06.12 등기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우선주		206,000 주 200,000 주 6,000 주	금 103,000,000 원	2020.01.30 변경 2020.01.30 등기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우선주	총수	240,000 주 200,000 주 6,000 주		2020.04.30 변경 2020.05.11 등기
1종전화우		34.000 주	금 120.000.000 원	

적

- 1. 기업에 대한 투자
-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 지배 및 경영지도, 육성 하는 사업
- 1. 기업 경영 컨설팅

703850

- 1. 금융 및 투자 컨설팅업
- 1.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정보제공 및 창업자에 대한 사업의 알선
- 1. 기업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 1. 해외기술의 알선,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 1. 기업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사업
- 1.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
- 1. 기업의 인수, 합병, 투자 등의 중개 및 알선
- 1. 기술 및 마케팅 관련 직원 훈련
- 1. 엔젤투자 및 창업 인큐베이팅
-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1. 기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 업무

1.	-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0.09.28 삭제	2020.09.29	등기>
1.	엑셀러레이터 활동(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 등)) <2020.09.28 추가	2020.09.29	등기>
1.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	<2020.09.28 추가	2020.09.29	등기>
1.	통신판매업	<2020.09.28 추가	2020.09.29	등기>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2020.09.28 추가	2020.09.29	등기>
1.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2020.09.28 추가	2020.09.29	등기>
1.	데이타 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업	<2020.09.28 추가	2020.09.29	등기>
1.	자료분석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사업	<2020.09.28 추가	2020.09.29	등기>
1.	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2020.09.28 추가	2020.09.29	등기>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0.09.28 추가	2020.09.29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홍경표 780606-*****

사내이사 조승욱 720418-*****

사내이사 정은숙 730105-*****

대표이사 홍경표 7806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87, 107동 2302호(신도림동, 신도림 1차동아아파트)

대표이사 홍경표 780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4, 501동 1701호(야탑동, 탑마을)

2020 년 04 월 10 일 주소변경 2020 년 04 월 20 일 등기

사내이사 조현명 840301-*****

2020 년 09 월 28 일 취임 2020 년 09 월 29 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식

1.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2.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

(a) 본건 주식 보유자에게 1주당 발행가액 및 발행가액에 대한 연복리 5%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이하 "우선분배액")을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분배 후 잔여금원이 있는 경우, 모든 우선주식을 당시 유효한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보통주식과 함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703850

- (b)단, 청산 시, 투자자의 청산 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 적용은 주주 분배금액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주주 분배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우선주 주식을 청산 당시 유효한 전환 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가정하여계산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보통주식과 함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주주 분배 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분배금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투자자의 투자 원금까지를 투자자에게 우선 분배하고, 잔여금에 대해 투자자의 우선주 주식을 당시 유효한 전환 비율에 따라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가정하여계산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보통주식과 함께 지분율에따라 분배한다.
- 예) 주주 분배 금액이 58억원일 경우, 8억원을 투자자에게 우선 분배하고, 3/50 * 50억원을 투자자에 분배하고, 잔여금액을 기존 주주에 분배
- 3. 현금 배당시 우선권

발행회사는 현금배당 시 보통 주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누적적, 참가적으로 우선 배당률은 본건 주식 주당 인수가액의 연 1%로 한다. 단, 배당 시행 여부는 발행회사가 별도 결정한다.

- 4. 전환에 관한 사항
- a)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조건: 본건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할 것을청구할 수 있다.
- 1) 1주당 전환가격: 1주당 인수가격(발행가격). 단, 본조 (c)항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격
-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액면금액 금 500원인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 3) 전환청구기간: 본건 전환우선주 발행일의 다음날로부터 본건 전환우선주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전환청구기간 이후에는 본건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 4) 전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수인은 별지 1 "전환권행사통지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여 발행회사에 제출(본건 전환우선주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동 주권을 함께 첨부)
- (b) 전환의 효력 발생: 본건 전환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c) 전환가격의 조정
- 1) 주식의 추가발행시 전환가격의 조정. 본조 (b)항에 따라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거나,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그 조정된 전환가격, 이하 본 단락에서 동일하다) 미만의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거나,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본건 전환우선주 주주가 본건 전환우선주의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 받아 위와 같은 주식, 증권 기타 주식인수권을 인수한 경우는 전환가격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A: 기발행주식수
- B: 신발행주식수
- C: 신발행주식 1 주당 발행가격
- D: 본건 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그 조정된 전환가격)

703850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 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한다. 또한, 위 산식 중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본건 우선주주가 참여하는 경우 이외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 한함)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 2) 합병, 분할 및 자본감소의 경우 전환가격의 조정.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분할 또는병합,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건 우선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3) 본조 (c)항 1호 내지 2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 4) 발행회사는 본조 (c)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사유 및 조정된 전환가격을 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d) 전환권 행사로 발행할 보통주의 수: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전환우선주의 수에 1주당 발행가격을 곱하고 이를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전환된 보통주의 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본건 전환우선주 1주의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없다.
- (e) 기타 사항: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전환우선주의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보통주를 상법 제351조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고, 또한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한 주주에게 전환청구일로부터 10 영업일이내에 보통주의 주권을 교부하도록 한다.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부담한다(단, 각 당사자는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과 관련한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각자 부담한다).
-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a) 신주인수권의 범위: 발행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으로 주식이나 주식 관련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 본건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의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 (b) 신주의 종류: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전환우선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는 발행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건 전환우선 주와 동일한내용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2020 년 01 월 30 일 설정 2020 년 01 월 30 일 등기

1종전환우선주식

1.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2.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 보유자에게 1주당 발행가액 및 발행가액에 대한 연복리 5%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이하 "우선분배액")을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분배 후 잔여금원이 있는 경우, 모든 우선주식을 당시 유효한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

703850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보통주식과 함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3. 현금 배당시 우선권

발행회사는 현금배당 시 보통 주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누적적, 참가적으로 우선 배당률은 본건 주식 주당 인수가액의 연 1%로 한다. 단, 배당 시행 여부는 발행회사가 별도 결정한다.

- 4. 전화에 관한 사항
- a)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조건: 본건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할 것을청구할 수 있다.
- 1) 1주당 전환가격: 1주당 인수가격(발행가격). 단, 본조 (c)항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격
-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액면금액 금 500원인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 3) 전환청구기간: 본건 전환우선주 발행일의 다음날로부터 본건 전환우선주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전환청구기간 이후에는 본건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 4) 전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수인은 별지 1 "전환권행사통지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여 발행회사에 제출(본건 전환우선주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동 주권을 함께 첨부)
- (b) 전환의 효력 발생: 본건 전환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c) 전환가격의 조정
- 1) 주식의 추가발행시 전환가격의 조정. 본조 (b)항에 따라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거나,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그 조정된 전환가격, 이하 본 단락에서 동일하다) 미만의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거나,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본건 전환우선주 주주가 본건 전환우선주의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 받아 위와 같은 주식, 증권 기타 주식인수권을 인수한 경우는 전환가격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A: 기발행주식수
- B: 신발행주식수
- C: 신발행주식 1 주당 발행가격
- D: 본건 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그 조정된 전환가격)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한다. 또한, 위 산식 중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본건 우선주주가 참여하는 경우 이외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 한함)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 2) 합병, 분할 및 자본감소의 경우 전환가격의 조정.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분할

703850

또는병합,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 면 본건 우선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보통주 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3) 본조 (c)항 1호 내지 2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격 이하일 경우에는액면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 4) 발행회사는 본조 (c)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사유 및 조정된 전환가격을 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d) 전환권 행사로 발행할 보통주의 수: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전환우선주의 수에 1주당 발행가격을 곱하고 이를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전환된 보통주의 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본건 전환우선주 1주의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없다.
- (e) 기타 사항: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전환우선주의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보통주를 상법 제351조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고, 또한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한 주주에게 전환청구일로부터 10 영업일이내에 보통주의 주권을 교부하도록 한다.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부담한다(단, 각 당사자는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각자 부담한다).
-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a) 신주인수권의 범위: 발행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으로 주식이나 주식 관련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 본건 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의 신주인 수권을 가진다.
- (b) 신주의 종류: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전환우선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는 발행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건 전환우선 주와 동일한내용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2020 년 04 월 30 일 설정 2020 년 05 월 11 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9 년 03 월 11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9 년 03 월 11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열 람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0년12월31일 14시33분12초